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합리화하고, 조각투자를 위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각투자 제도화 내용에 맞춰 2025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며, 주택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제25조)

노후 연금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계약기간 요건을 변경 전 보장성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으로 규정함.

나.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의 범위 조정(안 제26조의3제8항)

단일한 자산을 신탁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을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에 추가

함.

다. 주택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 보완(안 제40조의
2제2항·제8항·제12항)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있어 본인이 양도한 기존 주택보다 더 높
은 가액의 주택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1.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제9항의 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또는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6항제2호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이 조에 따른 최초납입일로 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65세 이후부터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할 것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의 것”을 “것”으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모집된”을 “모집 또는 매출된”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취득하거나”를 “취득(연금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목 4) 중 “축소주택의”를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의”로, “축소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소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주택을”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을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새로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취득하는”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으로, “4)”를 “4) 및 제8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항·제7항·제9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3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변경 시 납입일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제7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보험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차액의 추가납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8항·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	⑥ -----			
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	-----			
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	-----			
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	-----			
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	-----			
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	-----			
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	-----			
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	-----			
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	-----			
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	-----			
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	----- <u>제9항의 보험계약을 제</u>			
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u>외하고는 그</u> ----- . -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			
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	-----			
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	-----			
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	-----			
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	-----			

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⑦ 제6항 또는 제9항-----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2017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6항제2호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이 조에 따른 최초납입일로 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 기간 만료 후 65세 이후부터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⑦ (생략)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

<신 설>

자가 동일할 것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

1. -----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2. (생략)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것일 것

2. (생략)

⑩ · ⑪ (생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략)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매출된 것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⑨ -----

-----.

1. -----

-- 모집 또는 매출된 -----

2.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취득(연금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
하는 금액

1) ~ 3) (생략)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
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생략)

라. (생략)

2. (생략)

③ ~ ⑦ (생략)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등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로 보지 않는다.

1. (생략)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
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
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
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보다 작은 경우

⑨ ~ ⑪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가 취득한 축소주택의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소주택--

5)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현행과 같음)

2. -----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
----- 연금주
택의 양도가액에서 거주자 또
는 그 배우자가 새로 취득한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u>취득하는</u>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⑫ ----- ----- ----- ----- ----- <u>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u> ----- ----- <u>4) 및 제8항제2호</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